

광주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나67608(본소), 2022나6761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나67608(본소), 2022나67615(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15135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석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록영

변론종결 2023. 4. 20.

판결선고 2023. 6. 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15135(본소), 2022가단 522012(반소)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13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그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6,294,000원2)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9,881,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1. 기초사실의 기재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2면 제16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5. 15.부터 2021. 5. 3.까지 피고로부터 총 47,210,000원4) 을 차용하였고, 피고에게 총 83,504,000원5) 을 변제하였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받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총 83,504,000원 중 36,294,000원6) 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6,294,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36,2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15.부터 2021. 5. 3.까지 피고로부터 47,210,000원 상당액을 이체받은 사실, 원고 역시 위 기간동안 83,504,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 처음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이후 약 8년동안 동거하면서 서로 여러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온 점, ② 위 금전거래의 내용 중에는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원고의 계금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현금으로 지급된 금원도 존재하기도 한 점, ③ 피고가 연인관계인 원고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거나 원고와 피고가 함께 거주한 원룸의 비용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활비 명목의 금전거래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 전부의 성격을 반드시 대여금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대여금이 있더라도 그 부분의 특정도 어렵고 그에 상응하여 변제처리된 돈 부분 역시 그 특징이 어려워(원고 주장의 변제액은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밝힌 그것과도 같지 아니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역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조로 송금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0. 18. 피고와 사이에 그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40,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또한 피고는 2017. 10. 18. 이후로도 원고에게 3,750,000원을 추가로 더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은 43,75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0. 18.부터 2021. 5. 3.까지 원고로부터 23,868,3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9,881,650원(= 43,750,000원 - 23,868,35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 1) 원고가 2017. 10. 18. 피고에게 ‘현재 4,000만 원, 이상 없음, 원고에게 받을 것’이라는 기재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2017. 10. 18.자를 기준으로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마치 원, 피고 사이의 불륜관계를 주변에 폭로할 것처럼 원고를 협박하여 해당 계좌거래내역을 정확히 대조해 봄이 없이 강압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는바(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74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인서는 2017. 10. 18.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0원의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의 강압에 의하여 해당계좌 거래내역의 미확인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피고는 2017. 10. 18.자 이후로 원고에게 3,75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적 원인을 쉽사리 추단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위 3,75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불륜관계로 동거생활을 하면서 현금거래를 포함한 많은 금전거래를 하였고, 그 금전거래를 모두 일률적으로 금전소비대차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인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금전거래 내역 중에는 피고가 원고의 계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를 인정한 이 사건 확인서상의 4,000만 원 채무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송금한 3,750,000원이 대여금 외에 다른 성격의 송금일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에서 피고가 2017. 10. 18. 이후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3,868,350원을 제외한 차액인 16,131,6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6. 4.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섭, 판사 오정민, 판사 정수현

- 1) 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 2)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22.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함으로써 38,869,0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아래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에서 살펴볼 바와같이 이를 36,294,000원으로 선해한다.
- 3) 피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22. 10. 28.자 항소장을 진술함으로써 항소취지에 관하여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판결에서 피고의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4) 원고의 2022.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첨부 별지의 ‘차용원금’ 각 기재란의 총 합계이다.
- 5) 원고의 2022.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첨부 별지의 ‘변제액’ 각 기재란의 총 합계이다.
- 6)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돈을 38,869,066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2022.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첨부 별지의 ‘변제액’ 각 기재란의 총 합계인 83,504,000원과 위 첨부 별지의 ‘차용원금’ 각 기재란의 총 합계인 47,210,000원의 차액은 36,294,000원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수있는 금원은 36,294,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부당이득으로의 반환을 구하는 금원을 36,294,000원으로 선택한다.